### 남해군 고시 제2016-51호

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「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6. 15.

## 남 해 군 수

### 1. 영업시간의 제한

- 가. 선외기 설치어선 및 레이더 등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
  - 일몰 30분 후 ~ 일출 30분 전 (기상청 발표기준)
- 나.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 설치 낚시어선
  - 22:00 ~ 익일 03:00
  - ※ 단,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{선(내)외기 설치어선 포함}의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- 2. 소형낚시어선의 기준 : 소형낚시어선의 기준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으로 한다.

### 3. 영업구역 제한

- 가.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.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)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
  - 2) 야간 어로 및 항해제한·금지수역
  - 3) 무인도서 중 상주면 세존도
  - 4) 간출암
  - 5) 선외기 및 레이더 미설치 소형낚시어선은 남해군의 육지부(유인도서 포함)를 기점으로 하여 바다 쪽으로 직선거리 3마일 이상 해역
  - 6)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
  - 7)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·허가·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상 잡종선(목재류, 합

성수지 등)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

### 4. 안전운항 준수사항

- 가.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장치 (V-PASS)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한다.
- 나.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「선박패스(V-PASS)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에 의거 고장 또는 분실로 사전에 신고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.
- 다.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하며 사고발생 시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해양경찰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라. 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, 강풍, 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, 그 밖의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 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항을 금지 한다.
- 마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3조제2항의 승선자명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바.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 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

#### 5.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

가.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(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)은 반드시 구명조 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 나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야 한다.

- 1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 이하 같다)로 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.
- 2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3)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,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(가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(나)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 - (다)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- (라)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(마)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 - (바)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무단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
- 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6)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·채취금지체 장(체중)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,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.
- 8)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9)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### 다. 낚시어선어업자는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2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.
- 3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낚시 객과 상호연락 체계 유지를 위해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(기록)하여야 하며, 통신이 불가능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 다
  - (나) 출입항 신고 시 지점별 하선 인원을 신고하여 낚시 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.
- 4)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·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해 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 서, 소방서 등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6)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투기방지를 위해 폐기물수거통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- (나)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 식 간이변기를 1식 이상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  - ※단,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분뇨를 저장 또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(분뇨오염방지설비)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한다.
  - 7)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승선자 명부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

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- 8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9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- 6. 기타 제한사항: 미FDA에서 시행하는 지정해역 점검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고시 제2014-51호는 폐지한다.

##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

(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)

구분	설비
1. 구명설비	가. 최대승선인원의 12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. 이 중
	20%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.
	나. 최대승선인원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
	다. 지름 10㎜ 이상,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
2. 소화설비	가.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: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
	나.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: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
3. 전기설비	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
4. 그 밖의 설	가.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
비	나.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
	7]7]
	다. 핸드레일
	라. 비상용 구급약품세트
	마. 자기점화등 1개 이상
	바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	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

비고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「어선법」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.

#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(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)

### 1. 게시판의 제작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
나. 색상

1)글씨 : 검은색

2) 바탕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흰색

승객 준수사항 - 노란색

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### 2. 게시판의 부착장소

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### 【게시방법 예시】

# 승선정원 명

# 승객준수사항

##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(승객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등)은 반드시 구명조 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나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각호 승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야 한다.
  - 1)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 이하 같다) 로부터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2)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- 3)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한 후,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4)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(가)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(나)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 - (다)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 - (라)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(마)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 - (바)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무단 취사,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 - 5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6)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「수산자원관리법」으로 금지하고 있는 포획·채취금지 체장(체중)을 준수하고 포획·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  - 7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,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.
  - 8)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  - 9)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